

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

정관

제정 : 2019. 05. 13.
개정 : 2019. 10. 04.
개정 : 2021. 12. 06.
개정 : 2022. 03. 31.
개정 : 2024. 03. 29.
개정 : 2025. 03. 28.

제1장 총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라 하고, 영문으로는 “Oha Asset Management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 28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판매
3. 기업경영, 재무 및 인수·합병 관련 자문
4.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5. 국내외 기업, 경제,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연구,분석 및 용역 제공
6.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부동산, 주식 기타 유가증권,금전채권,부실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

7.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및 투자의사결정 지원
8. 자산가치평가
9. 채권매입·매각 및 매입재산의 관리
10.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자문
11.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
12.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모집, 설립, 출자 및 운용 등에 대한 업무
15. 기타 위 각 호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 또는 기타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ohaasse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백만(4,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W5,000)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삼십만(3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 시 제5조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④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및 주주가 적절히 요청하는 단위의 주권으로 한다.

제 9 조 (이익배당 및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및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을 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등한 비율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제 10 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 또는 특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 또는 특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발행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 또는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이나 선택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주금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1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 ④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상환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주금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발행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사채

제 17 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일백억원(W1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일백억원(W10,0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 21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2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24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 이사회가 정한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7 조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주주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3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제 30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

서 그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1 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회사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25.03.28 개정)
6.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9.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전에 관한 사항
10.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1. 기타 회사의 주요한 경영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한다. (2025.03.28 신설)

-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6장 감사

제 41 조 (감사의 수)

- 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2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43 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4 조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⑧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과 관련한 사항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5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6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장 계산

제 47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속명세서
 5. 영업보고서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익준비금 적립
3. 기타 법정적립금
4. 주주배당금
5. 임의적립금
6. 차기이월금

제 50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그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청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 51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기 타

제 52 조 (기타)

-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결의 또는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의 한다.
- ② 회사는 업무수행과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세칙 또는 내규를 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사업연도)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사의 정관과 상위 없음

2025년 03월 28일

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
대표이사 이 화 란